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ere's what the U.K. Tax Big Tech Really Needs to Worry About \(Bloomberg Tax Management Transfer Pricing Report – Oct 30, 2018\) By Hamza Ali](#)

영국 대형 기술 회사들의 조세관련 핵심 이슈

기술 관련 기업들 및 관련 투자자들은 영국의 Google Tax의 일환인 Digital Service Tax(이하 "DST")의 도입 확정을 받아들이는 동안 영국 정부가 다른 Google Tax인 Diversified Profit Tax(우회수익세)와 관련하여 106쪽 분량의 예산안에서 무형자산과 관련된 로열티 원천징수 부분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변경안은 저세율 국가에 지적재산권(이하 "IP")을 기반으로 한 외국기업들에게 영국 내에서 IP와 연계되어 발생한 총 매출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규 조항은 영국에서 IP를 기반으로 천만 파운드(약 1,300만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킨 회사 또는 저세율 국가의 IP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소득세가 영국의 50% 미만인 회사에 적용 할 예정입니다.

10월 29일 영국 예산안에서 발표된 IP관련 조항은 2020년부터 매출액 5억 파운드 이상인 기업들에게 도입될 DST(2%)보다 세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November 27, 2018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이 조항은 DST 도입 전에 시행 될 예정이며, 연간 4억7천5백만 파운드(약 6억 5백만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미국 기술관련 다국적기업

세무 전문가는 저세율 국가에 IP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의 기술관련 기업들이 금번 개정 세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해당 조항을 통하여 디지털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확보하고자 자국에 도움이 될 만한 조항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디지털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조항은 기업이 IP 관할 지역인 저세율 국가에서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실질이 입증되는 경우와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된 국가의 IP에 대한 소득에 한해서는 과세를 면제해줍니다.

영국에게 있어서 해당 조항은 Double Irish Structures(더블 아이리시 구조)를 대항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습니다.

Double Irish 는 아일랜드계 자회사를 사용하여 저세율 국가의 다른 자회사들과 로열티 거래를 조율하는 대표적인 국제 조세 회피 제도입니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앞으로 영국이 해외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Asia Pacific: Focus on transfer pricing, considerations for MNEs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이전가격에 집중함에 따라 고민에 빠진 다국적 기업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국가별 보고서 이행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 지역의 여러 다국적 기업은 2016년에 이미 첫 번째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투명성 및 납세자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과세당국이 이미 세부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규정 준수를 보다 더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은 가치 사슬 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수행 시점과 수익 회수시점을 식별 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오류를 찾기 위하여 세심한 검토를 할 예정이며, 위험을 평가 시 이전가격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세당국들이 국가별 보고서의 데이터를 보유함에 따라 글로벌 가치 사슬의 맥락에서 계약 검토 및 평가가 가능한 부분을 감안할 때, 다국적기업들은 과거보다 더욱 세밀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에는 이미 이전 가격 준수 활동이 증가했으며 높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전 가격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 정책이 사업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변경된 미국 세법은 다국적기업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세법은 향후 다국적기업의 모든 사업구조에 대한 입증과 이전가격정책 및 이전가격 동기화 보고서를 통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작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전가격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완료되었거나 업데이트 진행 중에 있으며 업데이트 된 이전가격 규정의 핵심 내용은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체결된 약정의 상업성과 제3자 간 계약의 일관성입니다.

과세당국이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향후 해당국가에서 수행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파악과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할 시 오히려 이중과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상호합의절차(MAP)로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각 국가에 있는 과세당국들에게 계약변경 권한을 부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Legal agreements in transfer pricing: aligning form and fact in a post-BEPS world](#)

이전가격에서의 계약서: BEPS 도입 이후, 형식과 실질의 일치

BEPS 도입 이후, 이전가격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OECD BEPS 프로젝트의 핵심목적은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과 수익배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조치를 취해,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OECD BEPS 프로젝트로 인해, 실제 수행 기능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반면, 경제적 실질과 수익이 일치하지만, 특수관계자간 법적 계약서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기업은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국과 같이 업데이트된 OECD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국가들에서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란 무엇인가?

경제적 실질의 개념은 BEPS Actions 8-10 최종 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OECD 가이드라인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원칙 중 하나는 특수관계자의 실제 행위가 법적 계약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가격분석은 특수관계자의 합법적인 계약서보다 특수관계자 당사자의 실질적인 행동, 즉, “진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OECD가이드라인 1장에서는 “서면 계약서는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계약서만으로는 이전가격 분석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며, “거래의 특성이 서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자의 실질적인 행동을 반영해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의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위와 같은 개념을 피상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OECD 가이드라인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법적 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회사 간 법적 계약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건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법적 계약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적 계약서가 여전히 이전가격 분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법적

계약서가 실질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납세자는 법적 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과 법적 계약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과 법적 계약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상세한 사실적 증거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많은 노력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실 증거를 다 수집하지 않은 상태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퇴사하는 등 기업의 증거가 점점 사라져 증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스스로 체결한 법적 계약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납세자 스스로의 신뢰성을 금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법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약정에 대한 역사적 증거(historical evidence)가 없기 때문에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의 전후 논증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계약서"와 "실질"이 불일치 하는 것은 납세자가 이전가격 이슈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KPMG 의 조언

결국 BEPS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납세자의 우선순위는 회사의 이전가격 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이전가격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는 특수관계자와의 법적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적 계약서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룹사의 실질에 맞추어 법적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7 OECD 가이드라인에서 법적 계약서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을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정확한 법적 계약을 맺지 않고 실질에 대해 소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Belgium: Draft circular on transfer pricing, position of tax administration

벨기에: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법률에 대한 초안

2018년 11월 9일, 벨기에 세무당국은 이전가격에 대한 “회보”(Circular letter)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보에서는 BEPS 논의의 전개에 따른 벨기에 세무당국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보 초안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공개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2017년 개정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의 연계

회보 초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2017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보에서는 최근에 새로 도입된 2017년 OECD의 개념 중 일부를 도입하고 있으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1~3장과 6~9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회보 초안에서는 계약서는 단순 “출발점”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의 실질과 계약서의 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면, 벨기에 세무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더 우선할 것이며 계약서에 대해서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을 통제하고 부담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각 당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보 초안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 너무 넓은 사분위 범위를 도출한 경제분석 연구의 잠재적으로 부인 가능성
- 벨기에 회계기준과 다른 회계 기준의 사용
- 예산원가 개념 사용
- 원가 기준 계산 및 도관 비용 계산 방법

경제분석에 대해 논의하는 장에서는 분석대상법인이 위치한 국가를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만, 특정조건 하에 다른 시장으로 비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회보 초안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 3년에 한번씩 경제분석을 업데이트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